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 규 선 의원 발의】



2018. 12. 1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5호로 2018년 11월 13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룰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지하수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규정(안 제4조)
- 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및 보전구역의 관리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8조~제11조)

바.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규정(안 제12조)

사. 지하수관측정 설치운영 규정(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14. ~ 11. 2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전구역 관리를 위하여 위반 행위나 지하수 오염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수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관측하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보전구역 관리, 수질보전 등을 위한 조치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 구민의 건강 증진 등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관 련 법 령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

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